

# 구매계약일반조건

## 기계류, 설비의 공급 및 조립/설치 작업, 공사계약

Edition 09.2008

-----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 조항들은 해당계약에 적용 되어 진다.

### 1. 계약의 체결

- 1.1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계약은 본 구매계약 일반조건만이 적용된다. 공급자의 계약일반조건은 여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1.2 발주 및 계약의 협정 또는 변경은 당사의 문서화된 확인에 의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구매부서로 보내져야만 한다. 당사의 관련부서와 계약사항의 수정을 목적으로 한 협의사항은 반드시 계약내용의 보완의 형태로 문서화 되어 구매부서에 의해서 최종 확인이 되어야 한다.
- 1.3 공급자는 계약사항들의 기밀성을 지켜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문서로 승인된 제 3자에게만 관련내용을 제공 할 수 있다.

### 2. 공급범위

- 2.1 발주서상에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품들의 리스트가 별도로 발주서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는 품질의 보증과 함께 해당 제품의 완벽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제품을 모든 필요한 부품들과 함께 공급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기계류 및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입증 할 책임이 있다. 기계의 구성요소와 부품들은 관리의 용이성 및 신속성, 검사 및 대체품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해당 부품들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2.2 설치장소 및 반경100미터 이내 지역에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작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의 공급이 가능 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해당 공사 및 기계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급라인(배관, 전선 등) 및 단자 등의 필요한 모든 설치는 관련 기술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 2.3 계약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발판, 지게차 또는 유사장비, 현장에서의 숙소 등은 공급자의 계약상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 2.4 시간당 비용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현장관리자의 확인 하에 반드시 해당 작업에 착수하여야만 하며, 공급자는 해당 추가작업의 내용과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공급자에게 제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5 계약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자의 하청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서의 작업

- 3.1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서의 작업 시에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서의 업무 및 제 3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 3.2 모든 작업은 공급받는 자의 설비관리자와의 확인 후에 착수되어야 한다.
- 3.3 조립 및 설치작업의 착수 전에 공급자는 작업과 관련된 해당 작업장 및 건물의 모든 토대, 단자, 구획 등을 사전에 검사하여 관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 3.4 공급자는 작업 시 환경보호상에 유해한 물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작업 시 어떠한 해로운 물질의 방출, 발견, 의심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3.5 공사기간 중 공급받는 자의 현장관리자는 작업을 지시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급받는 자의 타 부서의 작업지시 사항은 설비 관리자와의 협의 후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 3.6 공급자는 관련 작업의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작업관리자를 현장에 배치시켜야 하며 해당 작업관리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명된 작업관리자의 대체는 공급받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7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서 작업 시 해당 작업인원들의 리스트를 현장설비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리스트는

항상 최신 자료로서 유지 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작업인원들의 법률로 정해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 받는 자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시 공급자에 의해서 배치된 작업인원을 거부 할 수 있다.

- 3.8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계약과 관련된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지시사항을 해당 작업인원들이 반드시 준수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3.9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 가져온 모든 물품은 관리 및 통제 되어야 한다. 모든 물품의 리스트가 반,출입 전에 설비관리자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자의 하청업체는 그들의 공구, 장치, 설비에 회사명 또는 로고 등을 명확히 표시 한 후 공급 받는 자의 현장에 가져와야 한다. 물품의 이송 및 운송은 업무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 3.10 공급받는 자의 현장관리 규정의 보충사항이 적용 되어진다.

#### 4. 가격과 무게

- 4.1 협의된 공급가액은 불변하며 이는 부가세를 포함 하지 않는다.
- 4.2 협의된 가격은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 및 이러한 피해 시 수리비용을 포함한다. (공급받는 자의 지정장소에 납품 완료 시점 전까지 해당한다.)
- 4.3 단위가격 또는 균일가격으로 협의가 되어진 경우, 해당무게가 계약상의 무게보다 5%이상 부족하면 부족분의 금액을 제한 다.
- 4.4 실제 공급된 무게 분에 한하여 대금이 지급된다. 해당품목에 명시된 표시된 무게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되지 않는다.
- 4.5 무게는 공급받는 자의 계량담당자가 현장에서 계량한 수치로 결정이 된다. 만약 공급받는 자의 현장에서 계량이 불가한 경우는 운송 시 측정 된 운송업체에 의해 확인된 무게 치가 적용된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무게를 계량 할 수단이 불가 하다면, 품목에 표시되어있는 무게의 수치가 적용된다. 만약 무게당 단위가격이 다른 제품들이 동시 납품 시에는 각 제품의 별도의 무게가 납품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납품명세서에 각 제품별 무게를 별도로 표시 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받는 자의 식별에 의해서 구분한다. 공사 및 설치장비는 공급자가 납품하는 해당 제품의 무게측정에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 5. 납품조건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이상 없이 납품이 되기까지의 운송비 및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6. 원산지 증명, 수출 규제

- 6.1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청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완전하고 서명으로 보증되는 모든 세부사항과 함께 관련 증명서 및 서류를 신속히 제출 해야 한다.
- 6.2 납품되는 품목이 수출입관련법상 규제가 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7. 납기 및 지체 상금률

- 7.1 공급자는 협의된 납기를 지킬 수 없음이 판단 되자마자 지체 없이 공급받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이 조항이 공급자의 협의된 납기를 준수해야 되는 공급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 7.2 만약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체 상금률은 매 1일당 전체계약금액의 0.1% 이다. 단, 최대 전체금액의 5%를 초과 할 수는 없다. 공급받는 자는 최종 잔금 지불 전에 지체상금을 청구한다.
- 7.3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적합한 납기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만약 공급자와 협의에 의해서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 하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미해결된 부분의 자체 처리 또는 해당 작업을 수행 할 제 3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급자 소유의 도면 및 자료가 요구 되면 공급자는 즉시 공급받는 자에게 그러한 도면 및 자료를 전달한다.
- 7.4 납기지체의 대안으로서 공급받는 자는 해당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취소가 공급자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여 주지는 않는다.
- 7.5 상기의 조항들은 공급받는 자의 합법적인 권한에 부가 되어진다.

## 8. 계약의 종결

- 8.1 공급받는 자는 물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완료 전까지 해당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공급자는 해당 계약의 종결로 인한 관련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산출된 인건비 및 지출된 비용을 공급받는 자와의 협의 하에 청구 할 수 있다.
- 8.2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계약의 불이행의 근거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계약파기에 앞서 납품된 물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는 공급받는 자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만 대금이 지불 된다.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의 최종 협의는 해당 계약조건에 준하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종 협의 시에 반영된다.

## 9. 성능검사 및 승인

- 9.1 승인절차는 계약사항에 준하여 적용 된다. 해당 성능검사는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서면으로 해당 검사일정을 정하도록 요청하며 관련 승인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기계류 및 설비의 경우는 시운전 시작 후 4주가 되면 승인절차가 행하여 질 수 있다. (단, 시운전 시작 후 3개월이내에는 검사승인절차가 행하여 져야 한다.) 해당 기계류 및 설비는 시운전 기간에도 생산목적을 위해서 사용 되어 질 수 있다. 성능검사승인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검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양사 소속의 해당 직원의 인건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 9.2 승인검사가 해당 기계류 및 설비가 계약에 준하지 않게 제작이 되었음의 결과를 나타낸다면 공급자는 지체 없이 계약조건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승인검사를 위한 일정을 재 신청 해야 된다. 이러한 재 승인을 위해 발생하는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9.3 기계류 및 설비의 성능 및 작동,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해당 결함을 올바르게 보수하는 조건으로 검사는 승인 될 수 있다. 최종 잔금지급은 그러한 결함의 보수 전까지 보류된다. 상기 9항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최종 승인은 불가하다.
- 9.4 검사의 승인은 공급받는 자의 승인확인서로 공급자에게 확인되어진다.

## 10.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

- 10.1 납품되는 기계류 및 설비는 계약에 준하는 품질과 용량 등의 사양과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방의 관련법 및 규정, 지침 및 기준에 준해야 한다. 그러한 법규 및 지침, 기준사항 또는 계약서상에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술상의 요구사항에 준해야 한다.
- 10.2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사승인서에 명시된 승인일자 후 24개월로 한다. 공급자의 과실이 없이 검사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자의 요청 시 공급받는 자는 합당한 하자보증기간에 동의하도록 한다. 계약서상에 포함된 교환을 위한 예비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후 24개월 또는 납품 후 36개월중 선도래 일을 따른다.
- 10.3 공급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결함사항을 수리한다.
- 10.4 긴급한 경우 또는 공급자가 결함을 수리 해야 되는 의무로서의 증거의 사전 확보가 힘든 경우 공급받는 자는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결함의 원인이 공급자의 과실로 확인 될 경우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조치를 행하기 이전에 공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가 요하는 경우는 사전 통보 없이 먼저 조치 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공급받는 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행하여진 조치로 인해 발생된 결함을 제외하고 공급자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한 하자보증의 의무가 있다.
- 10.5 수리 및 교체 목적으로 납품된 제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는 서면상의 승인일로부터 새로운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수리 및 제품의 교체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서면상의 승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수리 및 제품의 교체 완료일로부터 15일 경과되는 날자로 한다.
- 10.6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부품의 교환으로 인한 작동상의 장애로 기계류 및 설비의 관련 부품들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부품들의 하자보증기간은 작동장애 기간만큼 연장된다.
- 10.7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결함의 발생이 공급받는 자가 수락하기에 부당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파기 또는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0.8 공급자는 기계류 및 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공급받는 자에게 초래된 운송비, 인건비, 자재비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결

합의 발생에 의한 수리의 결과로서 공급자의 고객에게 초래된 비용 또한 공급자는 부담한다.

10.10 상기의 조항들은 공급받는 자의 합법적인 권한에 부가 되어진다.

### 11. 도면 및 기타 부속문서

- 11.1 기계류 및 설비의 제작에 앞서 모든 도면은 공급받는 자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도면이 완성되면 검사승인 이전에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준하여 기계류 및 설비의 상세사항 및 공급된 제품, 서비스의 기술자료를 도면과 함께 공급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변경사항이 발생 되자마자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도면과 자료들의 소유권을 공급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은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제 3자는 기계류 및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분적인 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도면 및 자료들을 무상으로 사용 할 권리가 있다.
- 11.2 상기 항의 공급자의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공급받는 자의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해당제품 및 공급된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그러한 자료 등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협의된 공급자의 모든 제안사항 및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 11.3 모든 서류 및 장치 류, 공구 류 및 모든 부품 류들은 공급받는 자의 소유이며, 공급받는 자가 대금지불을 함으로서 그러한 소유권의 권리는 공급받는 자에게 넘어간다.
- 11.4 전술된 서류 및 제품 등은 공급받는 자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는 제 3자가 사용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기술된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11.5 공급받는 자는 모든 서류 및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2. 재해 방지, 배출가스 규제, 매연으로 인한 재해, 화재 방지.

- 12.1 공급자는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계약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험물질 운송의 관련 법규 및 규칙, 규정과 전문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12.2 공급자는 환경, 안전, 보건 및 화재방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공급받는 자의 환경, 안전, 보건, 소방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 이 항목에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해당 직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2.3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작업현장에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들이 환경, 보건, 안전 및 화재방지에 대한 의무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2.4 공급자는 공급자의 소방 단 및 소방 행정관의 화재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항상 준수 해야 한다.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작업이 화재의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가연성 물체의 주위에서의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환경, 보건, 안전, 소방관련 담당자의 승인 후 진행 되어야 한다. 해당 작업의 완료 후 소방관련 확인작업은 공급자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확인작업의 수행은 기계류 및 설비의 분해, 해체 및 제거 시에도 적용된다.
- 12.5 공급자는 재해방지, 환경, 안전, 보건, 화재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위험물질, 작업현장관리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급자에 의해서 준수 되어져야 하는 규정의 위반으로 야기되는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공급받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직원을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전술된 항목은 제 3자의 작업장소 및 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 공급자는 작업착수 전에 모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그러한 제 3자의 작업장 및 설비들의 상세사항을 입수한다.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13. 납품 및 선적지침사항, 포장

- 13.1 계약상에 명시된 납품 및 선적지침사항, 포장과 관련한 공급받는 자의 요청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포장재는 해당제품을 잘 보호하고 환경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과 다른 경우 해당 포장의 선적 건은 반품된다.
- 13.2 공급자는 납품 및 선적, 포장 관련한 지침사항의 미 준수로 인하여 발생된 공급받는 자가 부과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 14. 대금지급

- 14.1 공급받는 자는 판매세법에 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대금지불을 한다. 공급자는 해당계약의 공급받는 자에 의 한 모든 대금지급의 해당하는 최종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한다.

14.2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서면상의 승인 하에 공급자의 하청업체에게 권리를 양도 할 수 있다.

#### 15. 일반사항

15.1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 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의 서면상의 동의 하에 공급자가 제 3자에게 계약이행의 하청을 허락한다면, 본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조항들의 내용이 제 3자와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15.2 만약 본 계약일반조건에 어느 조항이 타당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머지 계약 조항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3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 발생시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 시에는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